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86
----------	-------

발의연월일 : 2023. 5. 4.

발의자 : 김수홍 · 김경협 · 김남국  
김병욱 · 김주영 · 노웅래  
박상혁 · 박성준 · 서영교  
서삼석 · 송재호 · 안규백  
의원(12인)

### 제안이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 관리 ·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설립 당시 계획하였던 출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설립 이후에도 미출자 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에 공사 재원을 투입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무상 사용 · 수익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최초 출자대상 재산의 미출자, 공사 재원투입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개선 · 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여 여객, 항공사, 시설임차인 등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하여 공사 설립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공사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사가 이 법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나. 공사가 공항시설에 대해 「공항시설법」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전대가 가능하도록 하며, 전대받은 자로 하여금 국가 또는 공사 귀속 조건부로 전대받은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
- 다.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재산을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며,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의 재원을 일부 부담한 경우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사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로, “축조하지 못한다”를 “축조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라”를 “제10조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공사에 귀속시킬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토지와 시설등의 귀속 등)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시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공사가 국가나 제3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공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더라도 재원을 부담한 경우에는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에 한하여 공사에 귀속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와 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p> <p>① (생 략)</p> <p>② 공사는 <u>제1항에</u> 따라 대부 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u>축조하지 못한다.</u> 다만, 그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p>	<p>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 ----- -----축조할 수 있다. &lt;단서 삭제&gt;</p>
<p>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p> <p>공사는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 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제10조에</u>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p> <p>② · ③ (생 략)</p> <p>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p>	<p>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p> <p>----- ----- ----- ----- ---- 제10조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신 설>

-----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공사에 귀속시킬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1조의2(토지와 시설등의 귀속 등)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시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공사가 국가나 제3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공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더라도 재원을 부담한 경우에는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에 한하여 공사에 귀속된다.